

電 氣 事 業 科

電 氣 料 金

申 基 亨*

電氣事業도 하나의 “企業”으로서는 一般企業과 本質的으로 같다. 이 事業도 一般企業과 마찬가지로 資本을 調達하여 設備을 하고 사람을 雇傭하고 原料를 使用하여 製品을 生産하고 需要者에게 販賣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事業은 一般企業과 比較하여 相異한 特性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事業의 特性은 各 產業別의 特性 即 紡織工業과 化學工業 等の 特性과 同格의 것이 아니고 한層 基本的인 面이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주어진 題目에 關하여 特性을 中心으로 하여 一般的인 解説을 하여 보기로 하겠다. 주어진 題目의 電氣事業은 一般供給事業으로 解釋하고 우리 나라 電氣事業法에서 같이 電氣事業으로 規定하고 있는 電氣軌道事業과 發送電事業은 對象으로 아니 하기로 한다.

1. 서비스의 公益性和 獨占供給—— 公益企業

(1) 一般企業과의 基本的인 相異點

電氣會社가 供給하는 電氣서비스가 一般商品보다 國民生活에 必需性이 높고 公共福祉와 關係가 깊다고 하여서 이를 公益서비스라고 하고 電氣會社를 公益企業이라고 한다.

그러나 單只 公益서비스를 供給한다고 하여서 電氣事業이 一般企業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公益서비스를 供給하는 事業으로서는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道路, 橋梁, 港灣 等 土木事業도 있고 公益性의 差異는 있을런지 모르나 理髮業, 大衆食堂業, 旅館業 等도 들 수 있다.

이 事業들과 電氣事業과의 相異點을 살펴보면 土

木事業은 財政의 支出에 依하여 建設되고 營業活動을 하지 않지만 電氣事業은 企業으로서 組織되고 營業活動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事業이고 理髮業 等 一般서비스業은 企業이고 따라서 營業活動을 하지만 競爭을 原則으로 하는 企業인데 對하여 電氣事業은 地域的으로 獨占供給하는 企業인 것이다.

電氣事業과 一般企業과의 基本的인 相異點은 必需性 높은 公益서비스를 供給하되 이를 獨占供給한다는에서 생기게 된다.

이 點은 所謂 公益企業에 있어서는 모두 共通되는 것이다. 現在 公益企業의 概念은 學問的으로 明確히 規定되어 있지 않지만 大體로 서비스의 “必需性”과 “獨占供給”을 具備條件으로 하고 “社會的인 認定”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러한 概念에서 現在 一般的으로 公益企業이라고 認定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a. 公衆運輸事業
- b. 公衆通信事業
- c. 一般電氣供給事業
- d. 一般가스供給事業
- e. 一般水道供給事業

이 事業들은 모두 所謂 公益서비스를 供給하되 地域的으로 供給을 獨占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여기서 公益企業의 概念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2) 獨占의 理論

自由企業體制은 企業活動에 있어서의 競爭原理에 依하여 原價切下와 品質改善을 促進함으로써 消費者의 利益을 保護하는 制度이며 獨占은 原則的으로 排除하는 것이다.

* 韓國電力株式會社·企劃部·料金役

a. 人爲的 獨占

그러나 自由企業體制 下에서도 政府의 財政收入 또는 社會的 消費規制를 目的으로 하여 政府가 專賣하거나 特定企業에 獨占을 許容하는 것도 있고 또는 特許權, 著作權 等を 保護하기 爲하여 特定期間 獨占을 許容하는 例가 있다. 이러한 獨占은 人爲的 獨占이며 原來 自由企業의 營業活動에 맡겨질 性質의 것을 人爲的으로 獨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b. 自然的 獨占

그런데 人爲的 獨占 外에 自然的 獨占이 또 있다. 自然的 獨占에는 原材料의 制限에서 생기는 獨占과 製造法의 秘密에 基因하는 獨占과 企業 固有의 資産의 性質에서 생기는 獨占이 있는데 이러한 獨占은 人間의 意思와 願望에 依하여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自然的으로 不可避하게 形成되는 것이다.

c. 公益企業의 獨占과 固定設備

公益企業의 獨占은 企業 固有의 資産의 性質에서 不可避하게 形成되는 自然的 獨占인 것이다.

電氣事業이나 가스事業은 初創期에는 獨占이 아니었다. 美國이나 日本에서는 同一地域에 同種 서비스 供給을 2個 會社에 許可해준 일이 있었다. 그 結果로 이 事業은 競爭體制로서는 經營이 繼續하여 圓滑히 되지 않고 오히려 社會的으로 不利하게 된다는 것을 經驗으로써 認定하게 되었다.

電氣事業等 所謂 公益事業의 經營上의 特徵은 서비스 供給設備의 建設에 要하는 投資의 比重이 極히 크다는 點이다. 이 事業은 一般 製造業과 같이 製造工場만 가지고는 營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電氣事業은 發電所와 모든 需用家의 使用場所를 直接 連結하는 機械화된 設備을 가져야 하고 이 設備을 運轉하여 個個 需用家에게 서비스를 直接 供給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揭示하는 表-1 및 表-2를 보면 他產業에 比하여 公益企業 特히 電氣事業이 設備投資의 比重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1) 固定資産 構成 比率表
(1963年 日本 大藏省 統計)

| | |
|------|-------|
| 電 力 | 92.5% |
| 가 스 | 76.9% |
| 運輸通信 | 65.5% |
| 鐵 鋼 | 53.8% |
| 판 프 | 53.5% |
| 化 學 | 48.8% |
| 織 維 | 38.1% |

| | |
|------|-------|
| 電氣機器 | 32.9% |
| 機 械 | 29.6% |

(表-2) 年間收入에 對한 設備投資 比率表

(Russell E. Caywood 著
Electric Utility Rate Economics p. 2)

| | |
|-----|-------------------|
| 電 力 | 4.15倍 |
| 가 스 | 2.83倍 |
| 鐵 道 | 3.62倍 |
| 電 話 | 2.98倍 |
| 製造業 | 0.35倍 (美國 100大會社) |

公益企業을 一般的으로 設備投資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따라서 이 事業은 總費用中 固定費(資本費와 固定的 營業費)의 比重이 極히 크게 되며 原料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業이 2個 以上 同一 地域에서 競爭한다면 設備의 重復이 不可避하게 되고 所謂 二重投資가 생겨서 資本의 效率이 낮게 되고 反面 地域的으로 限定된 需用家는 分割되어 固定費는 적은 供給量에 配分되게 된다.

이렇게 供給原價가 비싸게 되는데도 不拘하고 會社 間에는 需用家 爭奪을 爲한 料金引下競爭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原來 公益서비스는 質의 差異가 적은 關係上 需用家는 料금이 조금이라도 싼 供給者에게로 移動하게 되기 때문에 더우기 競爭은 激化되고 結局은 한 쪽이 制覇獨占하게 되는 것이며 繼續的인 競爭狀態의 維持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破滅的인 競爭의 結果로 한 會社가 獨占하게 된 然後에는 競爭에서 招來된 損害는 需用家에게 轉嫁되게 마련인 것이다.

公益事業의 獨占은 實際로 以上과 같은 競爭의 經驗을 거쳐서 事業 固有의 資産의 性質上 獨占이 需用家에게 有利하고 不可避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2. 政府의 監督統制

電氣事業等 公益企業에 對한 獨占 許容에 따라 需用家의 利益 保護를 爲하여 政府의 監督統制가 加하여지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政府는 會社에 對하여 供給義務를 지우고 工作物, 工事, 業務 및 財産 等に 關한 報告를 받고 檢査한 權限을 保有하며 事業의 休止와 廢止, 料金 其他 供給條件, 會計制度, 增資, 社債發行, 事業의 讓渡,

合併 등에 對한 監督統制를 加하는데 窮極의 目的은 모든 需要者에게 良好한 싸어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適正한 料金を 實現 維持하는데 있는 것이다.

(1) 싸어비스에 對한 監督統制

싸어비스에 對한 政府의 監督統制는 會社側에는 싸어비스供給義務로 되는데 이 內容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電氣싸어비스는 누가 어디서 要求하면지 差別없이 普遍的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이 點은 一般競爭 企業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人種이나 社會的 地位의 差別없이 要求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供給하여야 한다는 것은 勿論이고 供給區域 內 어디에서나——山꼭대기에 있는 한 집에서 要求하는데 對하여도——供給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限界費用이 一般料金에 依한 收入을 超過한다면 特別料金 條件으로 供給하게 되는 것이다.

b. 電氣싸어비스는 어느 때에나 需用家가 願하는 때에 充分히 供給하여야 한다.

이 義務는 電氣會社의 供給義務 中에서 가장 重要한 部分이다. 電氣事業은 싸어비스를 언제든지 充分히 需用家가 必要한대로 利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싸어비스業으로서의 義務를 遂行하고 價値를 認定받게 되는 것이다.

이 義務를 다하기 爲하여 電氣會社는 尖頭負荷에 맞추어 設備를 準備하여야 하고 需用增加를 豫想하여 設備를 擴張한 責任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點은 一般 企業에서는 全然 다르다. 商品의 需要가 增加하여 供給이 不足하게 될 경우에도 各個 企業體의 設備規模 擴張 與否는 各者의 意思에 依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c. 良質의 電氣싸어비스를 供給하여야 한다.

이 義務는 電氣會社에 競爭을 통한 品質改善의 刺戟이 없기 때문에 特別 強調되는 것이다. 會社는 恒常 最新의 技術을 研究 習得하고 完全한 裝置를 하여 싸어비스를 供給하여야 한다.

(2) 料金에 對한 監督統制

獨占價格理論에서 말하는 供給量과 價格의 人爲的 調節에 依한 所謂 最大利潤을 막기 爲하여 政府는 電氣事業等 公益企業에 對하여 싸어비스面과 아울러 料金面에서도 監督統制를 加하게 되는 것이다.

政府의 料金統制의 目標은 獨占利潤의 防止와 싸어비스供給義務의 뒷받침에 두게 된다. 電氣料金은 그 供給하는 싸어비스의 公益性에 비추어 되도록 살 것이 要請되지만 電氣會社에게 供給義務를 다할 수 없게 할 程度로 料金を 싸게 한다면 結果的으로 需用家의 利益이 保護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合理的料金 또는 適正料金이라는 用語가 나오고 그 必要性이 強調되게 되는 것이다.

料金策定에 關하여는 原則, 基準이 確立되고 要領, 方法도 定해져야만 適正料金이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政府가 料金を 統制할 경우에는 會社나 需用家에게 좋지 않은 結果를 가져오게 되기 쉽다.

(3) 適正料金の 原則

適正한 電氣料金이란 最少限度의 運營經費와 公正한 投資報酬의 合計를 會社所要 收入總額으로 하고 各個 需用家에게 이를 公平하게 負擔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原價主義의 原則」 또는 「公平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 原則은 極히 常識의이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이 原則에 따라 適正料金を 實現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基準, 要領, 方法에는 어려운 問題點이 많 이 있다.

最少限度의 運營經費는 誠實하고 能率的인 經營에서 所要되는 經費라고 할 수 있는데 經費實績에 依據하지 않고 客觀的 妥當性 있는 標準經費를 設定하여 이에 依據하는 것이 理想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로는 거의 不可能하므로 實績를 土臺로 하여 特殊한 事由 있는 것에 對하여 增減하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 一般的 慣例로 되어 있다. 이것은 經費의 統制를 過度히 하면 營業干涉의 弊端이 생기는 關係로 平常의 會計監督等의 間接의 手段으로 經費統制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會社所要 收入總額 算定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것이 “公正한 投資報酬”이다. 投資報酬는 事業에 投入된 資産에 對한 代價이며 具體的으로는 他人資本에 對한 利子와 自己資本에 對한 配當所要額 및 積立所要額의 合計를 말한다.

이 投資報酬의 最少限界는 電氣事業等 公益企業이 供給義務를 다하기 爲하여 設備를 擴張하는데 所要되는 追加資本을 資本市場으로부터 誘引할 수 있는 程度로 되어야 한다는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資本의 公正한 代價가 期待 안되는 企業에는 資本을 내거나 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며 새 資本을 調達 못하는 電氣會社는 供給義務를 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運營經費와 投資報酬가 最少限으로는 認定되기 때문에 競爭企業에 比하여 電氣會社의 經營은 安逸에 호르고 能率向上的 意慾이 생기지 않게 되기 쉽다. 特히 投資報酬를 認定하는 方法으로서 實際대로 借入別 金利에 依하여 所要 利子額을 算定하고 自己 資本에 對하여 配當金과 積立金을 算定하는 貸算金額方法을 取할 경우에는 金利切下, 資金活用, 資本構成의 改善 等に 努力할 意慾이 생기지 않게 되고 會社經營에 能率向上을 期待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獨占을 許容하는 公益企業에 對하여 能率向上을 刺戟하기 爲하여 先進國에서는 投資報酬 認定方式에 가장 腐心하고 여러가지 變遷過程을 거쳐서 只 今은 所謂 公正報酬原則을 確立, 實施하고 있다.

이 原則은 서비스 供給을 爲하여 使用되는 事業資產의 “公正價値”에 對하여 “公正한 報酬率”로 投資報酬를 算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資產의 評價와 公正率의 決定이 問題로 되는데 이것은 會社의 周圍 條件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資產의 評價方法으로서 物價變動이 없는 社會에서는 建設原始價格을 基準하는 것이 可할 것이고 物價騰貴가 甚한 社會에서는 再生産價格을 基準하는 것이 可할 것이다. 公正報酬率은 國內外의 資本市場의 金利와 會社 自體의 財政狀態의 展望에 依하여 被動的 立場에서 判斷, 決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投資報酬를 一定한 率에 依하여 算定한다는 것은 客觀的으로 妥當한 投資報酬를 認定함으로써 經營能率을 向上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經營의 能率 如何에 따르는 所謂 利益의 多寡를 認定하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能率向上으로써 생긴 超過利益은 一部 만을 會社가 차지하고 一部는 料金引下로써 需用家에게 還元하면 需給 兩者의 利益으로 될 수 있는 制度이다.

最少限度의 運營經費와 投資報酬가 會社의 所要收入이며 供給原價인데 이것을 各個 需用家에게 負擔시키는데 있어서는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 總 原價가 適正水準으로 定해졌다 하더라도 各個 需用家에게 不公平하게 負擔시키면 需用家は 亦是 獨占企業의 被害를 입게 되는 것이다.

各 需用家에게 公平한 負擔을 시키기 爲하여는 各

需用家에 對한 供給原價에 依한 料金表를 만들어 差別없이 適用하여야 한다. 一部 需用家에게 特惠를 준다면 會社는 所要收入 總額을 確保하여야 하기 때문에 餘他 需用家에 原價 以上の 負擔을 시키게 되므로 公平한 負擔을 爲하여는 供給原價에 忠實하여야만 된다. 公平의 原則도 原價主義에 包含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原價主義는 適正電氣料金の 最大의 支柱인 것이다.

料金表 作成에 있어서 各個 需用家 別로 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므로 全體 需用家를 몇가지 範疇로 區分하여 種別로 料金表를 作成하여 適用하게 된다.

3. 技術의 特性

(1) 需給即時性·貯藏不能性·負荷率

電氣서비스는 需用家가 願하는 때에 願하는 量이 供給되어야 하는데 貯藏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需用과 生産 및 供給이 同時에 이루어진다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 點은 一般 製造業과는 全然 다른 公益企業에서는 大體로 共通된다. 純粹서비스인 通信·運輸서비스와 半有體物인 電氣서비스는 貯藏이 不可能하므로 需給이 完全히 即時的이지만 有體物인 가스와 水道는 貯藏이 어느 程度 可能하므로 需給即時性は 相當히 緩和된다.

電氣서비스의 需給即時性으로 因하여 電氣會社는 年間 尖頭負荷를 供給할 수 있는 設備容量을 準備하여야 하게 되고 反面에 設備容量의 相當部分은 稼動치 않는 狀態가 생기게 된다.

電氣會社 經營에 있어서는 固定的인 經費(資本費와 固定的 營業費)의 比重이 極히 큰데 이 固定經費는 尖頭負荷를 供給하기 爲한 設備에 依하여 定해진다. 따라서 設備의 稼動치 않는 狀態를 적게하면 서비스 單位當 供給原價는 내려가며 내려가는 比率이 一般 製造業보다 훨씬 크게 된다. 電氣事業을 特히 原價遞減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負荷率이 電氣會社 經營에서 特히 料金表 作成에 있어 重要視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負荷率은 一定 期間의 平均負荷에 對한 尖頭負荷의 比率인데 設備의 利用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設備의 利用度는 事業規模와도 關係가 깊으며 事業規模가 클수록 豫備設備을 相對的으로 적게 가져도 되므로 總設備의 利用度는 높아지는 것이다.

(2) 不等率

電氣서비스는 需給即時性 때문에 萬若에 모든 需用家가 各己 最大電力을 同時에 使用한다면 電氣會社는 個個 需用家の 最大電力의 合計에 該當하는 設備容量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實際는 需用家の 서비스使用은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同時에 모든 需用家가 最大電力을 使用하는 일은 없는 것이 常例이며 不等率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不等率은 個個 需用家の 最大電力의 合計에 對한 同時에 일어나는 最大電力의 比率을 말하는 것이며 個個 需用家の 最大電力의 時間的 分散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不等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電氣會社는 相對的으로 작은 設備容量으로써 供給이 可能하게 되고 固定經費는 많은 需用에 分散되어 單位當 原價가 遞減되는 것이다.

4. 供給原價와 料金表

(1) 供給原價 構成의 特性

電氣서비스 供給原價에는 一般企業의 所謂 利益도 投資報酬도 하여 原價에 包含시키는데 이는 公益企業에서는 料金を 人爲的으로 策定 適用하기 때문이며 一般企業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點이다.

電氣서비스 供給原價 構成上의 特性은 所謂 設備投資事業에서 緣由되는 固定費에 있다. 表-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固定的인 資本費의 比重이 50% 以上이며 運轉維持費 中에서도 燃料費 以外는 大部分이 固定的인 經費이며 이 中의 一部가 所謂 可變費라 해도 固定費는 總 供給原價의 約 80%가 된다. 이 固定費는 設備에 關聯되는 것이며 電力量 供給의 多寡에 左右되지 않는다. 公益企業을 設備運轉事業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表-3은 電氣事業의 正常的인 原價構成 狀態를 보는 意味에서 美國의 것을 探하였다.

(表-3) 美國 私有電力會社 原價構成表 (1957年- E E I 統計表)

| 項目 | 金額(百萬弗) | 百分率 |
|-------|---------|-------|
| 事業收入 | 8,044 | 100.0 |
| 運轉維持費 | | |
| 燃料費 | 1,385 | 17.2 |
| 其他 | 2,254 | 28.0 |
| 資本費 | | |
| 税金 | 1,857 | 23.0 |
| 減價償却費 | 833 | 10.4 |

| | | |
|------|-------|------|
| 支拂利子 | 511 | 6.4 |
| 利益 | 1,204 | 15.0 |

(2) 原價의 3要素

電氣서비스 供給原價는 여러 角度에서 分類할 수 있으나 料金策定 目的에서는 다음의 세가지로 分類한다.

a. 需用家費

이 經費는 電氣會社가 需用家와 去來關係를 가지게 되면 電力量의 使用과 關係없이 또 需用家の 負荷의 크기와 關係없이 所要된다고 생각되는 經費를 말한다. 會社는 個別 需用家에게 서비스를 供給하기 爲하여는 配電線, 電柱, 柱上變壓器, 引込線, 計量器 等の 設備을 가져야 하고 檢針, 料金調定 및 收金을 하여야 한다. 實際의 경우 이 配電設備는 需用家の 負荷의 크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이러한 設備을 最少 規模로 할 경우를 假想하여 그런 경우의 配電設備의 資本費와 運轉維持費와 檢針, 調定, 收金費를 單純히 需用家라는 關係에서 생기는 經費로 보아 이를 需用家費라고 한다.

이 經費는 需用家當 大體로 同額이며 需用家數에 따라 變動한다.

이 經費는 各 需用家에게 반드시 負擔시켜야 할 最少限度額으로 된다.

b. 需用電力費

電氣會社는 尖頭負荷에 對應하여 發電設備, 送變電設備, 配電設備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 設備容量에 關聯되는 資本費와 運轉維持費를 (配電設備에 對하여는 需用家費 要素分 除外) 需用電力費라고 한다.

設備容量은 需用家の 負荷의 增大에 따라 增加되며 需用電力費는 設備容量의 限界 內에서 固定되고 電力量 供給의 增減에 따라 增減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設備容量 限界 內에서는 電力量 供給이 增加할 경우 電力量 單位當 原價는 低下하게 되는데 總 供給原價 中에서 需用電力費 比重이 가장 큰데다가 需用家費도 電力量 供給에 左右되지 않는 固定的인 經費이므로 電力量 單位當 原價低下는 激甚해지게 된다.

c. 燃料費

이 經費는 電力量 供給에 直接 比例하여 增減한다.

參考로 美國의 電力調査團 料金技術者가 1964年度 韓電의 總 供給原價를 3要素 別로 分類한 比重值을 보면 表-4와 같다(收入과 經費를 調査當時現

實적으로 調整한 것임).

(表-4) 3要素別 原價比重

| 要素別 | 金額(百萬圓) | 百分率 |
|-------|---------|-------|
| 需用家費 | 1,666 | 17.4 |
| 需用電力費 | 5,431 | 56.7 |
| 燃料費 | 2,474 | 25.9 |
| 計 | 9,571 | 100.0 |

(3) 料金表

a. 種別料金表

電氣料金表는 各 需用家에게 原價를 公平하게 負擔하도록 定하여야 하는데 需用家 個別로 定한다는 것은 實적으로 不可能하므로 모든 需用家를 서비스 使用狀態에 따라 몇가지 種別로 區分하여 種別 料金表를 만들어 適用하게 된다.

서비스 單位當 原價는 種別로 다르지만 同一 種別에서도 需用家 別로 다르며 同一 需用家도 每月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各 需用家の 서비스 單位當 原價는 各 需用家の 서비스 使用狀態에 依한 前記 原價 3要素의 配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結局 電氣料金表는 各 需用家の 서비스 使用狀態에 따르는 供給原價를 正當히 反映하도록 하는 것이며 種別 料金表는 種別에 따라 表示形態를 달리 하는데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萬若에 種別을 달리하는 2個 需用家の 負荷의 크기와 使用量이 같을 경우에는 實際 供給原價는 같으므로 2個의 種別 料金表를 各各 適用하여도 各 需用家の 負擔額은 같이 되도록 料金表가 만들어져야 한다.

種別 料金表는 各 種別의 大多數 需用家の 使用狀態에 따르는 原價 反映에 適合한 表示形態를 取하는 것이므로 種別의 類型에서 例外的인 使用狀態의 需用家の 原價 反映에는 不適當하게 되는 缺陷이 생기게 되기 쉽다. 또한 需用家를 種別로 區分하는 關係上 中間的인 狀態의 需用家가 생기게 되기 쉽다. 結局 料金表의 完全無缺치 못한 點을 補充하기 爲하여는 이러한 需用家들에게 適用할 料金表의 選擇權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種別 料金表는 各種 需用家の 供給原價에 忠實하기 爲한 技術的 方法이며 獨占企業의 收奪的인 差別價格이 아닌 것이다. 深夜料金 또는 特殊 需用家の 個別 特約料金は 差別待遇의 印象이 깊으나 이러한 料金도 限界費用을 基準하여 定하는 것이며 이러한 料金を 實施함으로써 設備利用度를 높이고 餘他 需用家の 平均原價를 低減시키는 效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是認되는 것이며 特惠的인 差別待遇는 아닌 것이다. 特定 需用家 또는 特定 産業에게 特惠的인 差別待遇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餘他 需用家の 負擔을 增加시키는 것은 公益企業料金の 原則에 벗어나는 일이다.

b. 料金形態

一般商品 價格은 總 原價에 依한 單一 價格으로 되지만 電氣料金は 獨特한 原價 3要素의 構成 때문에 單一 料金(種別)으로 할 수 있다.

理論的으로는 原價 3要素에 따라 需用家料金, 需用電力料金, 電力量料金の 3部制로 하는 것이 가장 妥當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種別에 3部制 料金を 適用한다는 것은 實際的이 못된다. 需用電力料金を 適用하기 爲하여는 負荷의 크기와 力率을 測定 또는 算定하여야 하는데 小需用家를 對象으로 이러한 測定, 算定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量에 比하여 經費가 너무 비싸게 먹여서 할 일이 못되고 大需用家에게 얼마 안되는 需用家料金を 分離 適用한다는 것도 無意味한 일인 것이다.

結局 實際的으로는 料金表 形態로서 小需用家에게 適用할 料金表에는 需用家費를 基準한 最低料金과 電力量料金으로 하고 大需用家에게 適用할 料金表에는 需用電力料金과 電力量料金으로 하는 것이 가장 適合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경우 小需用家 料金表의 電力量料金에는 電力量 使用範圍에 따라 需用電力費를 包含시키고 大需用家の 需用電力料金에는 需用家費와 需用電力費의 一部分을 包含시키고 需用電力費의 大部分은 電力量 料金에 包含시킨다.

需用電力費는 不等率의 大小에 따라 增減하는 것이며 不等率은 各 需用家の 負荷率에 따라 變動하는 것이므로 負荷率이 낮을 때에는 需用電力費를 조금만 負擔케 하고 漸次 負荷率이 높아짐에 따라 需用電力費 負擔을 增加시켜야 한다. 이러한 原價變動을 反映하는 料金形態로서 從量塊量料金制 또는 負荷率塊量料金制를 採擇하게 되는 것이다.

街路燈 또는 極小需用家에 對하여는 서비스使用이 固定的이므로 原價 3要素의 配合에서 오는 總原價가 固定되고 따라서 W當 또는 Kw當의 單一 料金を 適用할 수 있으나 이것은 電氣料金에서는 例外的인 것이다. 定額制는 計量器를 必要로 하지 않고 따라서 檢査를 안하여도 되고 料金測定이 簡單하다는 長點도 있으나 需用家 間에 서비스使用量

에 差異가 있을 경우에 不公平하게 되고 또한 써어비스濫用을 助長하는 短點이 있다. 電氣事業料金에서 定額制는 街路燈에만 適合하고 其他 需用에는 適合치 않은 것이다.

電氣料金에서 單位當 料金を 使用量 또는 使用時間이 많아짐에 따라 塊量制로 하여 짜게 하는 것은 原價를 正當히 反映하는 方法인 同時에 需用促進의 效果를 兼하여 가지게 된다. 電氣써어비스 供給原價에는 固定費의 比重이 極히 크므로 需用促進은 重要한 일 이 된다. 固定費를 더욱 많은 販賣量에 分散하기 爲하여는 販賣量 增加를 圖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需用을 促進하는 料金이라 할지라도 尖頭負荷時의 需用을 增加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尖頭負荷時의 需用增加에 對應하기 爲하여는 新規로 發電所를 建設하여야 하며 이러한 發電所는 避尖頭負荷時에는 不動設備로 되기 때문이다.

反對로 避尖頭負荷時에 生기는 需用에 對하여는 燃料費 만을 카바하면 되기 때문에 싼 料金を 適用할 수 있으며 販賣量을 增加하고 尖頭負荷를 높이지 않기로 하여 이러한 料金制度가 必要하게 된다.

電氣料金 形態는 計測器 發展과 더불어 發展하여 왔으며 近來에는 負荷曲線의 改善機能을 發揮하는 方向으로 變遷되는 傾向이 있다. 事業初創期 計測器가 없을 때는 房의 面積 또는 電球의 容量에 依한 定額制料金, 다음에는 วัต트아워·미터에 依한 直線從量料金制와 塊量制, 다음에는 킬로วัต트·디멘드·미터를 併用한 需用料金과 電力量料金の 2部制와 各 料金에 對한 塊量制로 發展하여 왔는데 佛蘭西에서 高壓 大需用家에 適用하고 있는 尖頭時間料金과 避尖頭時間料金制는 原價反映을 더욱 精密하게 함과 同時에 負荷曲線의 改善을 期하는 것으로 設備의 稼動率을 높이고 會社經營을 더욱 合理化하는 料金制度라고 할 수 있다.

5.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과 料金

(1) 電氣事業에 對한 政策

우리 나라의 電氣事業은 8·15解放 以後 20年 가까이를 供給力 不足과 非正常的 料金の 持續으로 供給義務를 다하지 못하고 지내 왔다.

그 根本原因은 元來 發電設備의 大部分이 北韓에 偏在하여 있었던 事實과 激甚한 인프레의 連續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또 다른 原因으로서 電氣事業에 對한 政府 政策의 不透明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惡性 인프레가 進行하는 環境 속에서는 料金の 正常化 또는 經營의 健全化를 實現할 수 없었을 것이었지만 적어도 1957~8年 以後 인프레가 緩慢해지고 特히 1958年 財産再評價法이 公布되어 모든 企業經營의 健全化와 發展이 促求되던 段階에 이르러서는 電氣料金の 正常化, 電氣事業의 健全化와 發展을 實現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緊急히 實現하여야만 할 時期였던 것이다.

이러한 環境과 時期에서도 政府는 極도로 料金 正常化를 嫌惡, 忌避하고 1961年 4月까지 非正常的인 料金を 持續케 하였다. 한便 財政投融資 등으로 電源開發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需用家는 싼 料金으로 不良하고 不充分한 써어비스를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다.

當時의 이러한 電氣事業에 對한 不透明한 政策은 電氣事業이 公益企業이며 政府所有 企業이라 하여 出血料金 經營을 繼續하는 것이 國民을 爲하는 것으로 莫然히 생각한데 起因하였는지도 모르겠으나 結局은 電氣事業의 基本 性格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였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電氣事業은 元來 基本 性格上 國有이건 民有이건 間에 企業메이스로 運營되어야 하는 事業이며 收支를 超越한 財政事業方式의 運營은 一時的 또는 部分的으로는 可能할지 모르나 長期的 또는 全面的으로는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電氣事業은 設備事業이며 또한 成長事業인 關係로 年年 巨額의 資本을 投入하여야만 하는데 그 規模는 財政支出로 充當할 수 없을 程度의 것인 反面에 이 事業은 써어비스를 需用家에게 適當한 料金으로 팔아서 營業活動을 할 수 있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參考로 1963年度 産銀「鑛工業센서스」에 나타난 年間 固定資産 投資額을 보면 電氣事業(電車事業 除外)이 7,754百萬元으로서 鑛工業 全體(從業員 5人 以上: 鐵道廳의 工作廠, 專賣廳의 煙草工場 包含)의 16,892百萬元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現在의 電源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을 爲하여는 電源開發資金은 앞으로 10年間은 年間 約 100億원이 所要되며 그 以後는 漸次 더 늘어 갈 것이 豫想된다.

이러한 巨額의 資金의 大部分은 主로 外國 資本 市場에서 끌어 와야만 하는 形便인데 그러기 爲하여는 電氣會社가 健全한 經營을 하여 資本을 끌어

윤만한 收益力을 가지게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方向으로 政策이 轉換된 것은 1961年 4月의 電氣料金 改正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最近에 이르러서는 所謂「公共料金の 現實化」政策의 闡明으로 더욱 明確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2) 電氣料金の 原價構成과 料金水準

우리 나라의 電氣料金は 8·15解放 以後 14次나 改正되었는데 1957年 1月의 12次 改正까지의 料金は 物價上昇에 뒤따라 燃料費, 人件費, 支拂利子等 最少限의 現金支出만을 引上調整한데 不過하였다. 修繕費도 恒常 아주 不足하게 計上하고 減價償却費는 馬山, 三陟, 唐人里의 美國援助에 依한 10萬Kw 火力이 完成된 後인 12次 改正時에 10萬Kw 火力設備에 對한 것이 計上되었을 뿐이며 投資報酬에 對하여는 考慮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1957年 1月 料金改正 直後부터 料金の 正常화가 論議되기 始作하였는데 이것은 當時에 計劃, 推進되던 忠州水力 建設을 爲한 借款獲得의 前提條件으로 不可避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料金 正常화가 겨우 1961年 4월에 實現되었고 1964年 9월에 다시 이것이 改正되었다.

1961年 4月 以後의 料金에는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를 正常的으로 計上하느라고 한 것이지만 料金策定時 設備資産의 帳簿價額을 基準으로 算定한 關係로 策定 始初부터 充分한 正常化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며 料金策定 後의 物價上昇에 따라 더욱 不充分한 것이 되고 말았다.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의 算定에 있어서 料金策定 當時 帳簿設備價額을 基準하였다는 것은 實質의 으로는 1961年 4月 料金は 1958年의 再評價資産價格을, 1964年 9月 料金は 1962年 6月末의 再評價資産價格을 基準한 것으로 된다. 또한 投資報酬率은 1961年 4月 料金에서는 10%, 1964年 9月 料金에서는 7.1%로 하였던 것이다.

要컨데 1961年 4月 以後 料金の 正常化를 指向하여 왔으나 從前의 料金水準을 無視하고 一時에 急激한 引上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64年 9月 料金の 投資報酬率도 7.1%로 된 것이며 現 料金は 減價償却費와 投資報酬 算定 基準이 現實價値에서 不足하고 또한 報酬率에 있어서도 現實的이 못되어 正常化面에서 볼 때 不充分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電氣料金を 引上할 때 引上率을 物價上昇率과 比

較하여 引上率의 過不足을 判斷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電氣料金は 過去에 너무나 非正常的이었고 至今도 完全히 正常化가 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基準으로 하는 比較는 正當한 判斷이 될 수 없는 것이다.

料金水準을 보는데 있어서는 먼저 原價構成 內容의 正常 與否를 알아보는 것이 옳은 것인데 1957年 以後 3次에 걸친 料金 策定 當時의 總原價 構成 內容을 要約해 보면 表-5와 같다(資本費 比重을 表-3과 比較 要望).

(表-5) 韓國 電氣料金 原價構成表

| 〈1957年 1月 料金〉 | | |
|---------------|---------|-------|
| 項 目 | 金額(百萬元) | 百分率 |
| 運轉維持費 | | |
| 燃料費 | 629 | 31.6 |
| 其他 | 1,149 | 57.8 |
| 資本費 | | |
| 税金 | | |
| 減價償却費 | 70 | 3.5 |
| 投資報酬 | 142 | 7.1 |
| 計 | 1,990 | 100.0 |
| 〈1961年 4月 料金〉 | | |
| 項 目 | 金額(百萬元) | 百分率 |
| 運轉維持費 | | |
| 燃料費 | 1,086 | 26.4 |
| 其他 | 1,855 | 45.1 |
| 資本費 | | |
| 税金 | 24 | 0.6 |
| 減價償却費 | 562 | 13.6 |
| 投資報酬 | 590 | 14.3 |
| 計 | 4,117 | 100.0 |
| 〈1964年 9月 料金〉 | | |
| 項 目 | 金額(百萬元) | 百分率 |
| 運轉維持費 | | |
| 燃料費 | 2,883 | 23.7 |
| 其他 | 3,219 | 26.2 |
| 資本費 | | |
| 税金 | 513 | 4.2 |
| 減價償却費 | 2,050 | 16.9 |
| 投資報酬 | 3,487 | 28.7 |
| 計 | 12,152 | 100.0 |

電氣料金 水準에 對한 批判에 있어서는 原價構成 內容의 檢討가 本質的인 것이며 單純한 物價上昇率

新 春 隨 想

三和 콘덴사工業株式會社

社長 吳 東 善

지난 해는 韓日國交 正常化의 問題로 因하여 國內 政界는 勿論 一般社會와 學閥에 까지 큰 波動이 일어나고 數10年來의 旱害와 洪水의 天災가 겹쳐서 큰 試鍊을 겪은 1年이었으며 61年 만에 韓日 兩國이 正式 條交를 맺은 歷史的인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 조용히 밝은 새해는 1次 5個年計劃의 매듭을 짓고 2次 5個年計劃을 爲한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飛躍의 해로서 우리 企業人은 勿論 國民이 다같이 새로운 覺悟 아래 올해도 亦是 「일하는 해」로서 맞이해야 될 줄 안다.

옛날 春園은 「10年한길」이라는 글을 쓴 일이 있다. 사람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는데 이것 저것 여러 方面에 머리를 쓰면 精力과 時間이 分散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되며 自己 天分에 맞는 한가지 일만을 擇하여 그 일을 10年만 精進하면 能히 그 일에 通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主張이었다. 10年을 하루 같이 精進하고 忍耐으로써 努力하면 무엇인가 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大成한 政治家, 學者, 企業家들의 過去를 보는데 그 大概가 荊棘의 길을 오랜 時日을 한결같이 精進한 努力의 結實로 알고 있다. 或者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運이 좋아서 크게 成功하였지」云云하는데 運이란 研究와 勤勉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 自身이 電氣工業 한 가지 일에만 於焉 27年이란 짧지 않은 歲月을 從

事하였다고 해서가 아니라 모름지기 企業家는 自身이 擇한 事業을 營爲함에 있어 어떠한 僥倖이나 惠澤을 바라는 마음은 秋毫라도 가져서는 안되며 研究와 忍耐와 努力으로 10年을 하루 같이 꾸준히 精進한다면 틀림 없이 成功할 것으로 안다. 이것은 企業家에게만 該當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凡百事에도 같은 理致가 通할 것이다.

오늘날 科學文明의 發達이 極에 達하여 멀지 않은 將來에 月世界旅行이 可能하게끔 되었음에 想到할 때 이 또한 이 事業에 從事한 數 많은 科學者들이 「10年 한길」로 精進한 所産일 것이며 모든 文明이 날로 發達하여 같은 各各 그 分野에 있어서 오랜 歲月을 하루 같이 研究하고 努力하느니 荊棘의 길을 꾸준히 精進하고 있는 專門家들이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올해는 丙午年으로서 말의 해이다. 옛부터 傳해오는 말에 關한 傳說이 많은데 龍馬니 名馬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千里馬니 駿馬니 하는 말도 있다. 하루에 千里길을 能히 달린다고 하니 말은 飛躍, 跳躍, 또는 一路邁進 등의 뜻과도 通한다고 생각된다.

올해는 말의 해이면서 明年부터 始作될 2次 5個年計劃事業 推進을 爲한 跳躍의 해이기도 하니 政府에서 내세운 經濟政策과 말의 해는 一脈相通하는 것 같다. 1次와 2次 5個年計劃事業 目的達成을 爲하여 「10年 한길」精神으로 말과 같이 꾸준히 달리고 또 달려서 自立經濟體制를 確立함으로써 先進諸國과 어깨를 같이 하여 躍進韓國의 모습을 海外에 誇示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또는 外國 料金水準과의 比較로써 正當性 與否를 論하는 것은 論理的 根據가 稀薄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電氣料金과 物價는 相互 循環關係에 있으므로 物價가 上昇하면 電氣料金도 引上 안할 수 없으며 現行 料金은 資本費가 現實化되지 않은 資産額을 基準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正常化하려면 物價上昇率 以上の 引上을 要할 것은 不可避한 일이라 하겠다.

電氣料金이 鑛工業 生産品 原價 中에 占하는 比重은 2~3%, 生計費 中의 比重은 2% 未滿에 不過 하지만 至今까지는 電氣料金を 長期間 据置하였다가 一時에 大幅 引上한 關係로 需用家에게 打撃을 주고 會社도 困難을 當하여 왔는데 이를 避하기 爲하여는 短期間에 小幅 引上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電氣料金은 長期安定이 要望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物價上昇이 甚한 環境에서는 電氣料金を 長期間 据置하여 들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